

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높은위험]						베어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u> 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베어링자산운용(주) (02-3788-0500)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08.30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09.1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서면문서 : 베어링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영업점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 시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 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 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ESG**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ESG** 평가결과의 개선, 투자전략의 이행 등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동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포함한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일준일 : 2026.08.30)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73170)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베어링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또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 가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반영하여 비재무적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 증권(주식형)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 추가형 / 모자형 /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이내	1.342%	0.648%	1.330%	1.342%	236	376	522	829	1,6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	없음	2.194%	1.500%	1.590%	2.194%	223	453	689	1,180	2,53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이내	1.044%	0.350%	0.980%	1.044%	156	266	381	624	1,32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없음	1.644%	0.950%	1.030%	1.644%	168	341	520	896	1,949
	(주 1)'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2 개월이 되는 시점이며 종류 E 형은 종류 Ae 보다 총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으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Class C 의 경우 Class C1, Class C2 로 전환되는 경우 예상되는 보수 및 비율을 산출 한 것입니다. (주 4)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2026 년 7 월 말 기준)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025/08/31 ~ 2026/08/30	2024/08/31 ~ 2026/08/30	2023/08/31 ~ 2026/08/30	2021/08/31 ~ 2026/08/3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007-08-31	110.24	56.50	39.68	19.34	9.18					

비교지수

2007-08-31

113.08

59.33

38.35

16.63

7.10

수익률 변동성

2007-08-31

39.20

30.72

26.51

22.58

19.42

(주 1) 비교지수: [KOSPI X 100%]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주 3)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운용전문
인력

(2026.08.30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주식 및 혼합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총합	ESG 운용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최상현	1970	책임 운용역	11개	17,867 억원 (팀운용)	88.92%	47.64%	93.48%	49.68%	24년 3개월	5년
신광선	1973	부책임 운용역	3개	547 억원 (팀운용)	115.86%	59.38%			22년 2개월	5년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 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각 운용역 간의 성과 차이 및 운용역 성과와 회사 성과 차이는 전략 및 혼합유형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6.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참조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 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등의 가격 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u>오후 3시 30분</u>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매입 • <u>오후 3시 30분</u> 이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방법 • <u>오후 3시 30분</u>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 <u>오후 3시 30분</u> 이후 :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 산정방법 : (직전일의 자산총액 -부채총액)/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과세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원천징수되며(개인 및 일반 법인 15.4%),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포함)이 연간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2%(과세표준 200 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 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Class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Class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Class C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Class C1 수익증권으로 전환 2.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Class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기타 전환 관련 세부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베어링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 총액	
효력발생일	2026.09.11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종류(Class)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 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2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 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2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계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관(F)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신탁의 명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베어링 벨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주식)	7317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7317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BS0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	731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929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93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7317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BS0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웹형(C-W)	BS0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BS06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S0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BS07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AP7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BS07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조원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신탁의 명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주식)	7317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7317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BS0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	731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929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93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7317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BS0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웹형(C-W)	BS0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BS06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S0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BS07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AP7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BS07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08.31	최초설정
2008.07.02	투자대상 변경 (주식선물 추가)
2008.10.21	장기증권펀드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변경
2009.05.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세이 밸류스타일 주식 투자신탁 → 세이 밸류스타일 증권 투자신탁(주식)]
2010.02.08	세법 개정(2010.01.01) 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09.12.21)사항 반영 이익분배관련 문구 수정
2010.05.03	판매보수 인하
2010.09.06	판매보수 인하
2012.11.15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2012.08.01발표> 내용반영
2013.04.03	- 사명 변경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주식.. → 베어링자산운용 주식..) - 펀드명 변경 (세이밸류스타일... → 베어링밸류스타일....) - 홈페이지 주소 변경 (www.seiak.com → www.barings.com/ko) - 외 주주변경 관련 사항 및 자구한 문구 변경
2013.10.28	- 결산업데이트 -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내용반영 - 자본시장법 및 세법개정 내용 반영 - 오기정정
2013.10.31	- 운용전문인력변경(부책임용전문인력: 김태규 → 최상현)
2013.11.29	- 운용전문인력변경(운용전문인력: 김재동/최상현 → 최상현/ 신광선)
2014.03.04	- 클래스 추가 - 내용 업데이트
2015.04.24	- 결산업데이트 - 법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16.05.30	- 모자형 전환 - 펀드명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환매수수료 폐지 - 결산업데이트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2016.07.02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11	- 모투자신탁의 변경(일부 모투자신탁 삭제 :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6.07.30	-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변경
2016.09.08	- 결산업데이트
2017.06.22	- 클래스 추가(Ae, C-F, C-W, C-P, C-Pe, C-P2, S-P) - S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0.35% → 0.30%)
2017.09.15	- 결산업데이트
2017.12.06	- 집합투자업자 보수 인하
2018.08.1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2018.11.13	- 결산 업데이트
2019.08.19	- 기업공시서식 변경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2019.09.16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2019.10.08	- 결산 업데이트
2020.09.16	- 결산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2021.08.25	- 투자전략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구 수정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1.09.16	- 결산 업데이트
2022.09.15	- 결산 업데이트
2023.09.15	- 결산 업데이트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4.02.27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ESG 공시)
2024.09.13	- 결산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법 개정 반영
2025.09.11	- 결산 업데이트
2026.09.11	- 결산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29, 7층 (대표전화: 02-3788-05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

베어링자산운용(주)

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팀운용

(2026.08.30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주식 및 혼합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총합	ESG 운용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최상현	1970	책임 운용역	11개	17,867 억원 (팀운용)	88.92%	47.64%	93.48%	49.68%	24년 3개월	5년
신광선	1973	부책임 운용역	3개	547 억원 (팀운용)	115.86%	59.38%			22년 2개월	5년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최상현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한가람 투자자문 주식운용1본부 (2002.04~2007.02)	- 한화자산운용(구. 푸르덴셜) 주식운용1팀 (2007.03~2013.01) - 베어링자산운용(주) 주식운용팀 (2013.02~현재)
신광선	-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 -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팀 (2002.07~2006.11)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팀 (2006.12~2013.11) - 베어링자산운용(주) 주식운용팀 (2013.11~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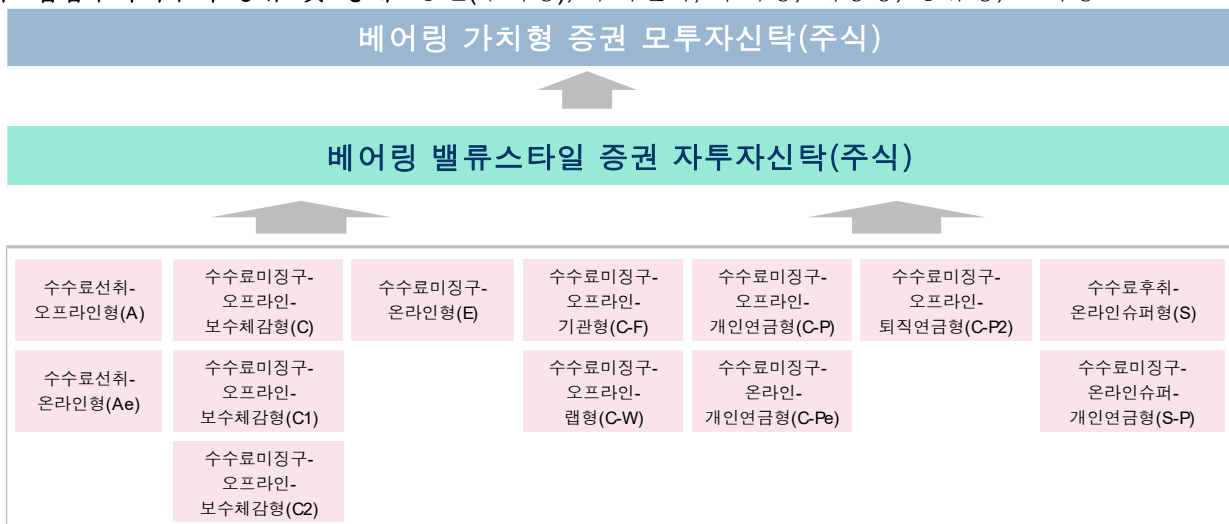
- 주1)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 주2) 운용중인 공·사모 펀드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 (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 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5) 각 운용역 간의 성과 차이 및 운용역 성과와 회사 성과 차이는 전략 및 혼합유형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

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 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관(F)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수익증권의 Class(종류)별 차이점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구분 (Class)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액의 1.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액의 0.5%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2)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웹형(C-W)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 (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	-	-	-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6500	0.6480	0.0300	0.0140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6500	0.3500	0.0300	0.01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채감형(C)	0.6500	1.5000	0.0300	0.01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채감형(C1)	0.6500	1.2500	0.0300	0.01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채감형(C2)	0.6500	1.0000	0.0300	0.01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0.6500	0.9500	0.0300	0.01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0.6500	0.0300	0.0300	0.01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웹형(C-W)	0.6500	0.0000	0.0300	0.01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0.6500	0.8000	0.0300	0.01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0.6500	0.4000	0.0300	0.01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0.6500	0.6000	0.0300	0.014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0.6500	0.3000	0.0300	0.01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0.6500	0.2400	0.0300	0.0140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 주1) 보수(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2) 보수 외의 기타 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 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베어링 가치형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자투자신탁	
베어링 가치형 증권투자신탁(주식)	투자재산의 100% 이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베어링 가치형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 국내 주식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가치주에의 투자는 50% 이상 -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투자목적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또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 가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반영하여 비재무적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를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기업의 재무 역량에 기초하여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여 편입한 후 적정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기다려 수익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평가 기업을 재무적 기준으로만 평가 하기에 다양한 요소 존재합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가치 평가 단계에서부터 가치주 발굴을 위한 재무 분석과 함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하는 ESG 통합 전략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가치에 대한 분석 기준을 강화합니다. - ESG 통합 전략을 통해 기업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요소들과 더불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경제, 산업 및 기업 성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 이 투자신탁은 주식최대편입비율에 맞춰 주식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분석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 할 계획입니다 [비교지수] KOSPI 10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100% 이하의 범위에서 투자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베어링자산운용(주)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 가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반영하여 비재무적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벤치마크 대비 장기적, 누적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KOSPI 100%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투자신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수익 증권	100%이하	집합투자규약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 베어링 가치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②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③ 기타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적용예외]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①내지 ③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①내지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 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 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나. 모투자신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국내주식	60%이상 (가치주에의 투자 5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가. “가치주”란 위에서 정의된 “주식” 중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이 업종평균 이하이거나 시장전체대비 낮은 주식을 의미
② 국공채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국공채”라 한다)
③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금리스왑거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⑤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⑥ 증권의 대여 1)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⑦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⑧ 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환매조건부대상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⑨ 증권의 차입 2)	20% 이하	-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기타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음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적용예외]

-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①내지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①내지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2) 투자대상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 하게 상기 ⑥내지 ⑪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ESG 관련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이 투자신탁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석을 위해 기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ESG 평가 항목을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리서치를 통해 개별 기업의 ESG등급을 산정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반영합니다.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각각의 평가 항목에 모두 중점을 두지만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최종 평가 등급을 산출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ESG 평가 등급을 5개(Excellent, Good, Average, Poor, Unfavorable)로 분류하고 각 E,S,G 별로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체 평가한 Average 등급 이상의 기업에 포트폴리오의 50% 이상 투자합니다. 다만,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체 ESG 평가 등급이 Average 미만인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②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의 발행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③	동일법인 투자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 매매	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 로부터 1개월 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⑤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⑥	후순위 채권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적용 예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 투자대상 ⑥내지 ⑪의 규정, 2. 투자제한 ②내지 ④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2) 2. 투자제한 ②, ④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식최대편입비율에 맞춰 주식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 할 계획입니다.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거래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KOSPI X 100%]

‘KOSPI’ 설명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수로 국내증권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1980년 1월 4일 당시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으로 하여 현재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지수는 주가의 변화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유무상 증자 등 주식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일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을 주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 이자 및 배당수익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를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가치주 유니버스 선정기준]



* **PBR(Price on Book 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 주가와 1주당 순자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서 구함

* **PER(Price Earnings Ratio, 주가수익률)**: 주가를 1주당 세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1주당 세후순이익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 되어 있는가를 나타냄. 과거와 현재, 유사종목들간의 세후순이익과 주가를 비교, PER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음을 의미

* **PSR(Price Sales Ratio, 주가매출액비율)**: 주가를 주당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함.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개발하는데 이용되는 투자지표로 주가매출액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일수록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임을 의미

* **EV(Enterprise Value, 총 기업가치)**: 기업 매수자가 기업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며, 주식 시가 총액(시장에서 형성된 주식가격에 그 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 순부채(총차입금-현금예금)를 더한 것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이전의 이익으로, 편익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구함

[가치주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ESG 요소 평가 적용]

이 투자신탁은 기업의 재무 역량에 기초하여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여 편입한 후 적정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기다려 수익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평가 기업을 재무적 기준으로만 평가 하기에 다양한 요소 존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가치 평가 단계에서부터 가치주 발굴을 위한 재무 분석과 함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하는 ESG 통합 전략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가치에 대한 분석 기준을 강화합니다.

ESG 통합 전략을 통해 기업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요소들과 더불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경제, 산업 및 기업 성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베어링 ESG 평가방법]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석을 위해 기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ESG 평가 항목을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리서치를 통해 개별 기업의 ESG 등급을 산정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반영합니다.
-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각각의 평가 항목에 모두 중점을 두지만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최종 평가 등급을 산출합니다.

- ESG 평가는 베어링 그룹의 선진 기법을 바탕으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ESG 분석 평가 능력을 보유한 애널리스트의 독자적인 기업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당사 투자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의 펀더멘털 및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투자 기회와 잠재 리스크 및 ESG 를 평가합니다. ESG 평가 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잠재적 투자 리스크와 기회 및 ESG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필요 시 기업 경영진들을 만나고, 기업의 운영 시설을 방문하며 업계 내 경쟁업체를 분석합니다.
- 또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해 MSCI, SUSTAINALYTICS, 한국 ESG 연구소 등 ESG 전문 기관의 분석 보고서 및 평가 데이터를 기초로 개별 기업 등급 및 세부 항목을 검토하는 등 외부 리서치 지원 자료도 적극 활용합니다.

[베어링 ESG 평가 항목]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탄소 배출을 낮추는 프로그램 존재 여부 - 원재료 소싱, 제조, 유통 등 전반의 과정에서 탄소발자국 감소 프로그램 존재 여부 - 물 사용량 관리에 회사의 고위 협의체 (지속가능협의회)가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영위지역에 대한 재생 및 복구 프로그램 여부 - 환경관리시스템의 유무 - 클린테크 혁신이 핵심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인력 규모, 최근 구조조정/대량해고, 고급기술 보유 및 고도훈련 된 인력 의존도 - 성과 연동 금전적 보상, 그 외 비금전적 보상 - 높은 부상률, 사망자 발생 섹터 - 데이터 수집과 사용 정책의 엄격함, 데이터 보안 관리 시스템의 엄격함 - 대출이 과도하게 높은 가계 노출도, 고위험 금융 상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략 - 우려되는 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노출도, 관련 규제 노출도 - 분쟁 소지가 있는 원재료 의존도	 - 이사회회장의 독립성 유무(임원, CEO가 겸임할 경우 감점) -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이 절반이상인지 여부 - 감사회에 임원진 포함 유무 (있을시 감점) - 최대주주 혹은 임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이슈 유무(소송, 배임 등) - 임원들의 급여,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이 동종업계와 비교했을때 과도한지 여부 - 임원진들의 일회성의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 유무

※ 동 평가 항목은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며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 항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베어링 ESG 평가 등급]

등급	의미
Excellent	ESG의 가치를 기업 조직과 사업구조에 잘 반영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
GOOD	ESG의 가치를 기업조직 또는 사업구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구조적인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전망
AVERAGE	ESG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업 조직과 사업구조에 반영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진행이 미진
Poor	ESG의 가치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경영전략이 아직 명확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
Unfavorable	ESG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움

[ESG 통합 포트폴리오 전략]

- 베어링 자산운용은 ESG 평가 등급을 5 개(Excellent, Good, Average, Poor, Unfavorable)로 분류하고 각 E,S,G 별로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업이 속한 섹터에 따라 미리 정한 E,S,G 섹터 비중을 각각의 E,S,G 점수에 곱하여 최종 종합 점수를 산출하여 ESG 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
- ESG 평가 등급은 재무분석을 통해 산출된 기업의 최종 가치에 premium 과 discount 로 반영되어 재무적 분석과 ESG 분석이 통합된 기업의 최종 가치가 산출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자체 평가한 AVERAGE 등급 이상의 기업에 포트폴리오의 50% 이상 투자합니다.
- 다만,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체 ESG 평가 등급이 Average 미만인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업과의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 ESG 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주 관여(Engagement)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베어링자산운용은 ESG 평가등급 외에도 기업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ESG 등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ESG 전망등급을 제안하고 관리합니다.

[가치주에 기반한 ESG 통합 투자 프로세스]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모투자신탁의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거래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KOSPI X 100%]

‘KOSPI’ 설명

베어링자산운용㈜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수로 국내증권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1980년 1월 4일 당시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으로 하여 현재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지수는 주가의 변화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유무상 증자 등 주식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일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됩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 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모두자신탁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주식최대편입비율에 맞춰 주식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 배분 전략은 지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모두자신탁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을 주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 이자 및 배당수익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 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 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 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 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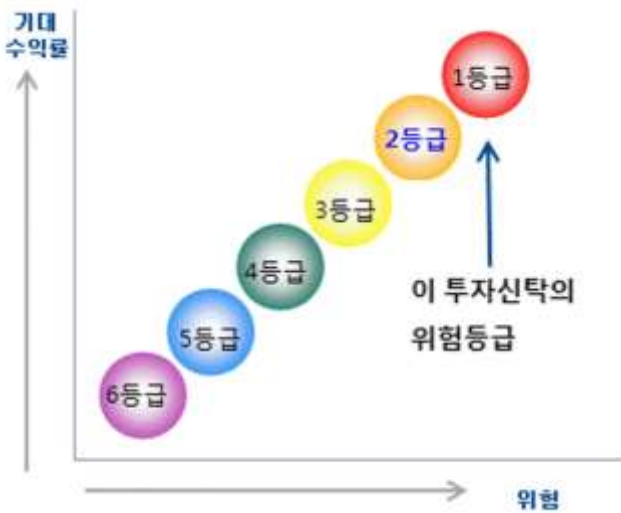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ESG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통합 적용 및 ESG 촉진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정보를 펀드 운용 프로세스에 통합합니다. 또한 ESG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위해 비즈니스 관행에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직접 투자를 통해 ESG를 촉진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ESG 정보를 분석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ESG 정보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전략의 집합투자기구와 비교에 투자 성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SG 위험에 대해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 리서치 평가와 더불어 ESG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전문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습니다. 투자 여부를 평가할 때 집합투자업자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수도 있는 정보 또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ESG 관련 정보나 ESG가 적용된 방법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합리성, 완전성 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SG 개념이나 주제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와 사회적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ESG 기반의 투자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집합투자기구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경제상황의 변화 및 주식 시장변동에 연동되어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84.69%로 이 투자신탁은 **6단계 등급 체계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으로 계산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84.69%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분포에서 하위 2.5%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변환산 보정계수 ($\sqrt{250}$)를 곱해 산출합니다.

※ 추후에도 매 결산 시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기준)>

등급	1 매우높은 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 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낮은 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다만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각 판매회사의 자체 상품위험등급에 따라 각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위의 투자위험등급과 상이한 투자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및 사유

변경일	변경 전 위험등급	변경 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2026.09.11	2등급	1등급	수익률 변동성 상승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베어링자산운용(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청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매입좌수는 익영업일에 확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마켓타이밍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함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

-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미국이민국화국(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된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 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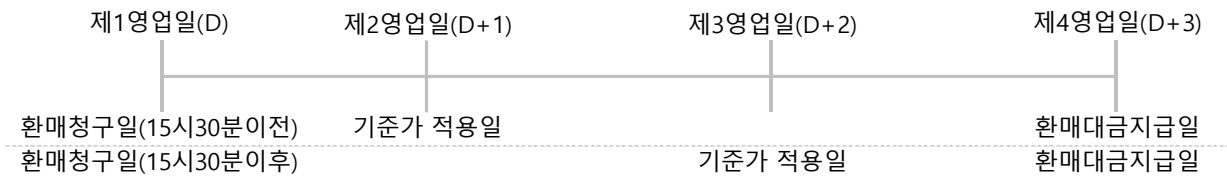
환매 불가	환매 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환매수수료 미발생
X	X	O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②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증권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 ① 집합투자계약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

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를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할 날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은 나머지 자산(이라 "정상자산"이라 함)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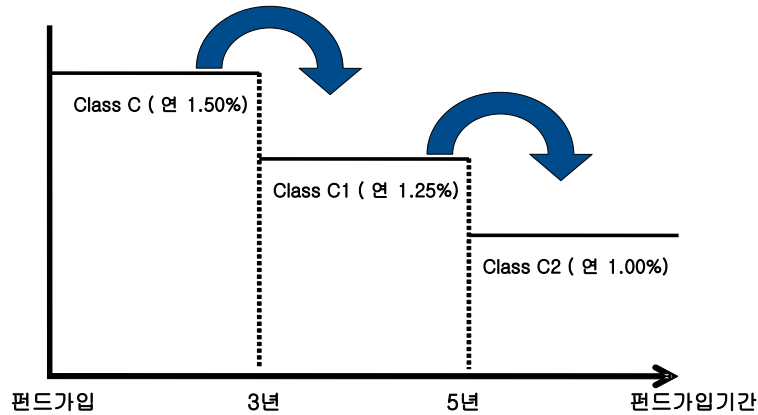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Class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Class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Class**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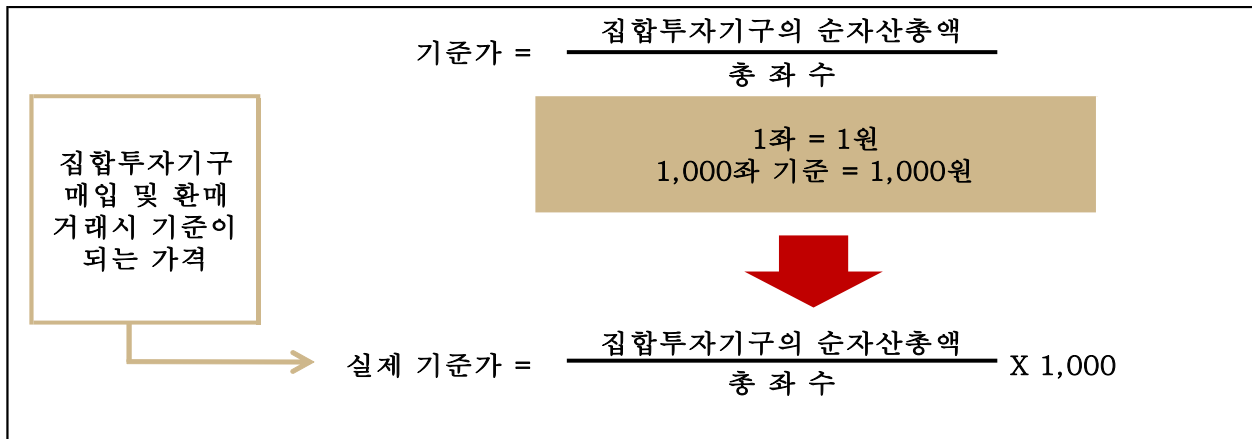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구분	내 용
계산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계산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계산·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공고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서류공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기준가 산정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 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기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상기 상장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시에는 모투자신탁의 평가 당일 순자산가액(1좌당 기준가격)으로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Class)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액의 1.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액의 0.5%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1)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2)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	-	-	-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총 보수	(동종유형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총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650	0.648	0.030	0.014	1.342	1.330	0.000	1.342	1.342	0.189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650	0.350	0.030	0.014	1.044	0.980	-	1.044	1.04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	0.650	1.500	0.030	0.014	2.194	1.590	0.000	2.194	2.194	0.1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1)	0.650	1.250	0.030	0.014	1.944		0.000	1.944	1.944	0.1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2)	0.650	1.000	0.030	0.014	1.694		0.000	1.694	1.694	0.18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0.650	0.950	0.030	0.014	1.644	1.030	0.000	1.644	1.644	0.1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0.650	0.030	0.030	0.014	0.724	-	-	0.724	0.72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0.650	0.000	0.030	0.014	0.694	-	-	0.694	0.69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0.650	0.800	0.030	0.014	1.494	-	-	1.494	1.49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0.650	0.600	0.030	0.014	1.294	-	-	1.294	1.294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0.650	0.400	0.030	0.014	1.094	-	-	1.094	1.094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0.650	0.300	0.030	0.014	0.994	-	-	0.994	0.994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0.650	0.240	0.030	0.014	0.934	-	0.000	0.934	0.934	0.189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연도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 보수·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은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거래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의미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의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8.31 ~ 2026.08.30)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1,881
금융비용	-

주4)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2026년 7월 말 기준)을 의미합니다.

주6)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3자 ESG 관련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평가 비용을 지급하나, 그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총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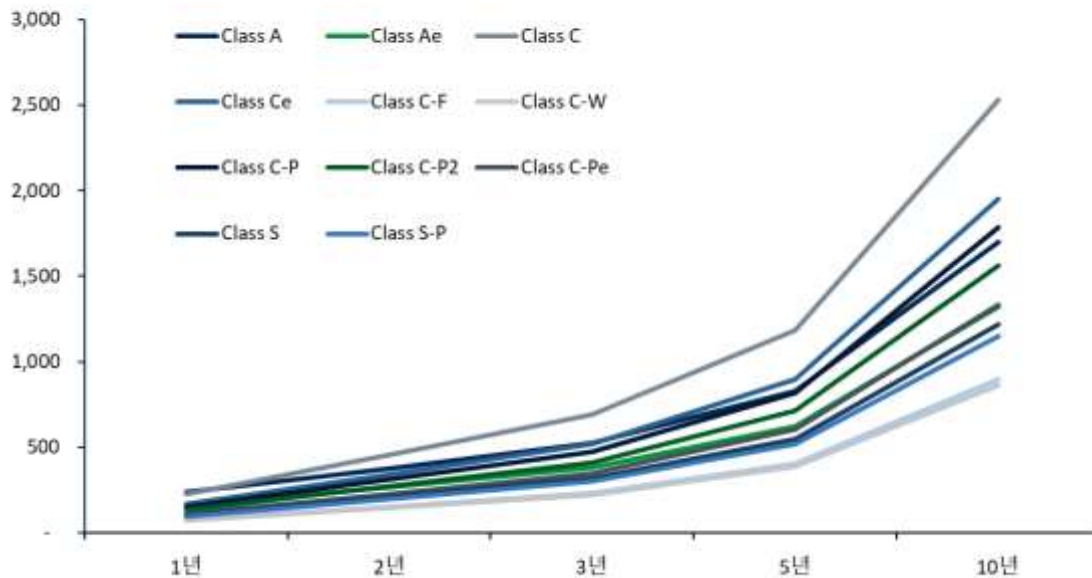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 분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6	376	522	829	1,69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36	376	522	829	1,699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6	266	381	624	1,32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6	266	381	624	1,3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3	453	689	1,180	2,53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23	453	689	1,180	2,5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8	341	520	896	1,94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8	341	520	896	1,9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4	151	232	403	89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4	151	232	403	8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1	145	222	387	86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1	145	222	387	8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2	310	473	817	1,78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2	310	473	817	1,7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2	269	411	711	1,56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2	269	411	711	1,56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2	228	348	604	1,33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2	228	348	604	1,33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2	207	317	550	1,2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2	207	317	550	1,2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5	195	298	517	1,14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5	195	298	517	1,148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를 0%,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2) Class C의 경우는, 투자기간이 3년과 5년이 경과함에 따라 Class C1과 Class C2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6년 5월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별 매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부터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투자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투자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음 설명은 본 투자설명서의 작성일 당시의 세법관련 내용으로 국내법과 국내의 세무관행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 및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에 관한 설명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수익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임을 전제로하여 작성된 것으로 과세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의 과세결과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투자자 개인의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에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투자신탁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 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판매회사가 원천 징수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포함)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연금외수령시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0년 1월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등에 따라 과세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종합안내(<https://100lifepla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17기(2023.08.31~2024.08.30)	회계감사면제	해당사항없음
18기(2024.08.31~2025.08.30)	회계감사면제	해당사항없음
19기(2025.08.31~2026.08.30)	회계감사면제	해당사항없음

※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으로, 법령에 의한 회계감사 적용 면제되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19기	제18기	제17기
	2026.08.30	2025.08.30	2024.08.30
운용자산	1,176,150,429	589,656,470	539,732,951
유가증권	1,166,021,212	585,826,057	535,934,487
현금 및 예치금	10,129,217	3,830,413	3,798,464
기타자산	19,337	6,581	9,420
자산총계	1,176,169,766	589,663,051	539,742,371
기타부채	13,058,235	11,792,103	12,229,291
부채총계	13,058,235	11,792,103	12,229,291
원본	312,145,149	326,288,386	344,557,919
이익조정금	850,966,382	251,582,562	182,955,161
자본총계	1,163,111,531	577,870,948	527,513,080
운용수익	669,592,652	92,574,997	64,718,607
이자수익	137,892	83,519	97,037
배당수익	13,900,550	12,569,737	12,940,565
매매평가차손익	655,554,206	79,921,741	51,681,005
기타수익	4	0	0
운용비용	0	0	0
당기순이익	669,592,652	92,574,997	64,718,607
매매회전율	0	0	0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 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 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19기 0원, 18기 0원, 17기 0원)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19기 0원, 18기 0원, 17기 0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원, %)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881,755,310	1,880,913	0.100	621,390,273	615,191	0.099
기타(레포, 대차, 콜 등)	24,409,746	10	0.000	-	-	-
합 계	1,906,165,056	1,880,923	0.099	621,390,273	615,191	0.099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원, 주)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 (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 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0,785	943,597,642	12,285	938,111,636	969,723,120	96.74	32.64

주1)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주2)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3)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9기	제 18기	제 17기
	2026.08.30	2025.08.30	2024.08.30
운용자산	1,176,150,429	589,656,470	539,732,951
현금및예치금	10,129,217	3,830,413	3,798,464
현금및현금성자산	10,129,217	3,830,413	3,798,464
유가증권	1,166,021,212	585,826,057	535,934,487
수익증권	1,166,021,212	585,826,057	535,934,487
기타자산	19,337	6,581	9,420
미수이자	19,337	6,581	9,420
자 산 총 계	1,176,169,766	589,663,051	539,742,371
기타부채	13,058,235	11,792,103	12,229,291
미지급이익분배금	13,058,235	11,792,103	12,229,291
부 채 총 계	13,058,235	11,792,103	12,229,291
원 본	312,145,149	326,288,386	344,557,919
이익잉여금	850,966,382	251,582,562	182,955,161
자 본 총 계	1,163,111,531	577,870,948	527,513,080

부채 및 자본 총계	1,176,169,766	589,663,051	539,742,371
총좌수	312,145,149	326,288,386	344,557,919
기준가격	3726.19	1771.04	1530.99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19기	제18기	제17기
	2025.08.31 ~ 2026.08.30	2024.08.31 ~ 2025.08.30	2023.08.31 ~ 2024.08.30
운용수익(운용손실)	669,592,652	92,574,997	64,718,607
투자수익	14,038,442	12,653,256	13,037,602
이자수익	137,892	83,519	97,037
배당금수익	13,900,550	12,569,737	12,940,565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657,044,775	83,791,328	52,874,262
지분증권매매차익	93,896,845	5,396,326	7,608,143
지분증권평가차익	563,147,930	78,395,002	45,266,119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490,569	3,869,587	1,193,257
지분증권매매차손	1,490,569	3,869,587	1,193,257
기타운용수익	4	0	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669,592,652	92,574,997	64,718,607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2058.04	270.40	179.9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31~2024/08/30	401	557	49	74	117	171	345	540
2024/08/31~2025/08/30	345	528	38	58	64	101	326	590
2025/08/31~2026/08/30	326	578	51	141	72	224	312	1,176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31~2024/08/30	61	81	0	0	0	0	61	92
2024/08/31~2025/08/30	61	91	10	17	10	17	62	106
2025/08/31~2026/08/30	62	105	0	0	0	0	62	223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

(단위: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31~2024/08/30	18	20	14	17	19	21	13	16
2024/08/31~2025/08/30	13	16	9	11	21	25	1	2
2025/08/31~2026/08/30	1	2	0	0	1	2	1	1

주)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1)

(단위: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31~2024/08/30	2	3	4	6	6	9	0	1
2024/08/31~2025/08/30	0	1	4	4	4	5	0	1
2025/08/31~2026/08/30	0	1	2	4	1	1	2	5

주)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2)

(단위: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31~2024/08/30	123	168	6	8	21	29	108	163
2024/08/31~2025/08/30	108	162	6	9	16	24	98	171
2025/08/31~2026/08/30	98	170	6	16	3	7	101	366

주)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단위: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31~2024/08/30	216	291	27	40	69	98	177	264
2024/08/31~2025/08/30	177	262	11	15	11	18	177	305
2025/08/31~2026/08/30	177	303	44	119	64	197	159	570

주)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단위: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8/31~2024/08/30	2	2	0	0	0	0	2	2
2024/08/31~2025/08/30	2	2	0	0	0	0	2	3
2025/08/31~2026/08/30	2	3	0	0	0	0	2	6

주)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합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www.kofia.or.kr)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08/31 ~ 2026/08/30	2024/08/31 ~ 2026/08/30	2023/08/31 ~ 2026/08/30	2021/08/31 ~ 2026/08/30	(%)
투자신탁	2007-08-31	112.76	58.47	41.47	20.91	9.51
비교지수	2007-08-31	113.08	59.33	38.35	16.63	7.10
수익률 변동성(%)	2007-08-31	39.20	30.72	26.51	22.58	19.42
Class A	2007-08-31	110.24	56.50	39.68	19.34	9.18
비교지수	2007-08-31	113.08	59.33	38.35	16.63	7.10
수익률 변동성(%)	2007-08-31	39.25	30.76	26.55	22.61	19.43
Class C	2007-08-31	108.77	55.34	38.60	18.39	7.35
비교지수	2007-08-31	113.08	59.33	38.35	16.63	7.10
수익률 변동성(%)	2007-08-31	39.28	30.79	26.58	22.63	19.39
Class C1	2010-08-13	109.17	56.66	39.52	18.97	11.60
비교지수	2010-08-13	113.08	58.48	37.86	16.38	9.30
수익률 변동성(%)	2010-08-13	39.27	30.04	26.01	22.23	16.01
Class C2	2012-08-31	109.58	55.99	39.21	18.94	10.74
비교지수	2012-08-31	113.08	59.33	38.35	16.63	9.49
수익률 변동성(%)	2012-08-31	39.26	30.77	26.56	22.62	18.61
Class E	2007-08-31	109.69	56.07	39.28	18.99	8.81
비교지수	2007-08-31	113.08	59.33	38.35	16.63	7.10
수익률 변동성(%)	2007-08-31	39.26	30.77	26.56	22.62	19.44
Class S-P	2017-11-03	111.03	57.14	40.26	23.65	10.74
비교지수	2017-11-03	113.08	59.33	38.35	22.30	10.03
수익률 변동성(%)	2017-11-03	39.23	30.75	26.54	20.93	1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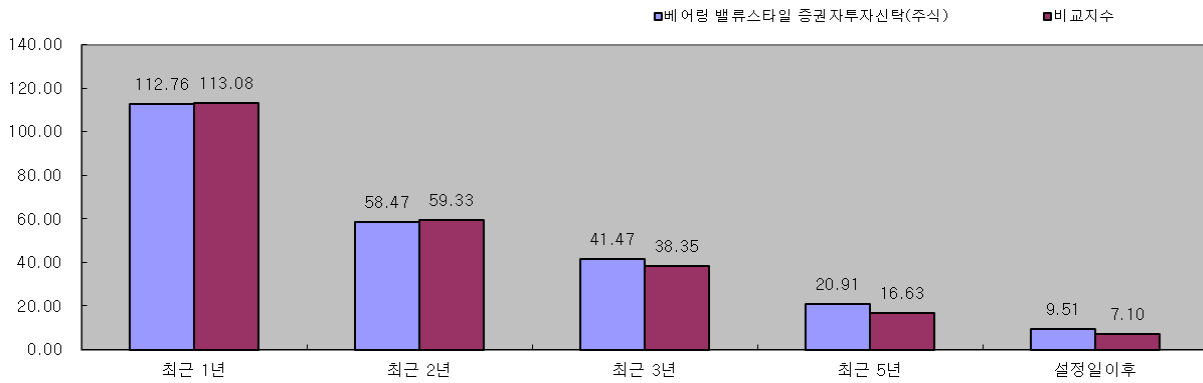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KOSPI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주4) 상기의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조지수의 등장 및 참조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참조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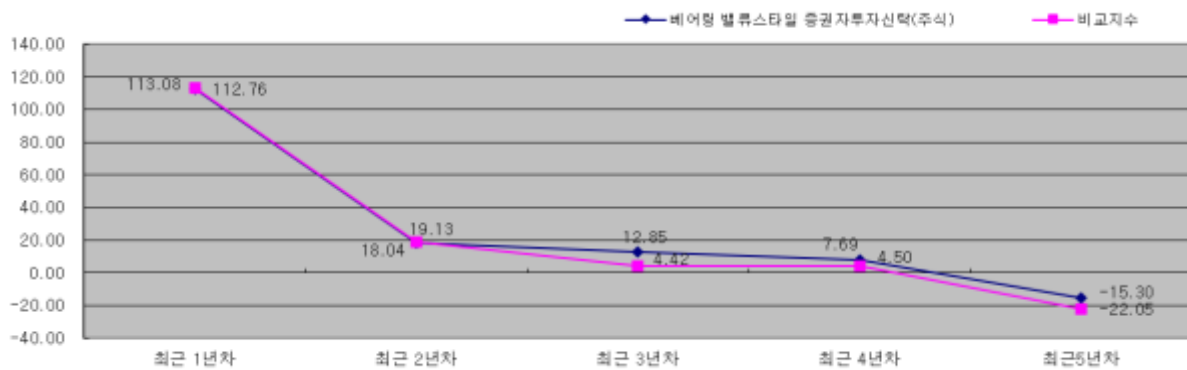
나. 연도별수익률 추이(세전기준)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5/08/31 ~ 2026/08/30	2024/08/31 ~ 2025/08/30	2023/08/31 ~ 2024/08/30	2022/08/31 ~ 2023/08/30	2021/08/31 ~ 2022/08/30
투자신탁	2007-08-31	112.76	18.04	12.85	7.69	-15.30
비교지수	2007-08-31	113.08	19.13	4.42	4.50	-22.05
Class A	2007-08-31	110.24	16.50	11.36	6.29	-16.46
비교지수	2007-08-31	113.08	19.13	4.42	4.50	-22.05
Class C	2007-08-31	108.77	15.58	10.45	5.41	-17.17
비교지수	2007-08-31	113.08	19.13	4.42	4.50	-22.05
Class C1	2010-08-13	109.17	17.34	10.74	5.67	-16.97
비교지수	2010-08-13	113.08	17.87	4.42	4.50	-22.05
Class C2	2012-08-31	109.58	16.10	10.98	5.93	-16.76
비교지수	2012-08-31	113.08	19.13	4.42	4.50	-22.05
Class E	2007-08-31	109.69	16.16	11.03	5.97	-16.71
비교지수	2007-08-31	113.08	19.13	4.42	4.50	-22.05
Class S-P	2017-11-03	111.03	17.01	11.86	4.71	-
비교지수	2017-11-03	113.08	19.13	4.42	3.27	-

주1) 비교지수: KOSPI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상기의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조지수의 등장 및 참조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참조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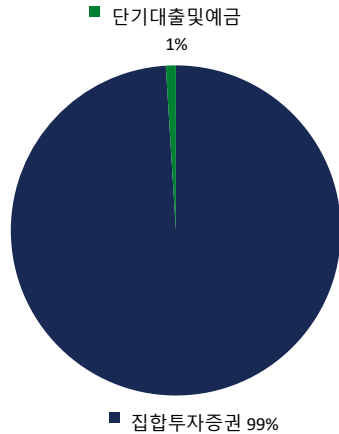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6.08.30 기준):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 민국 (KRW)	0	0	0	1,166	0	0	0	0	0	10	0	1,176
	(0.00)	(0.00)	(0.00)	(99.14)	(0.00)	(0.00)	(0.00)	(0.00)	(0.00)	(0.86)	(0.00)	(100.00)
자산 합계	0	0	0	1,166	0	0	0	0	0	10	0	1,176
	(0.00)	(0.00)	(0.00)	(99.14)	(0.00)	(0.00)	(0.00)	(0.00)	(0.00)	(0.86)	(0.00)	(100.00)

주 1)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라. ESG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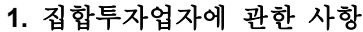
1. ESG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행 현황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 포트폴리오 구성시 ESG 통합전략을 통해 ESG 평가 등급을 5개 (Excellent, Good, Average, Poor, Unfavorable)로 분류하고 각 E,S,G 별로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체 평가한 Average 등급 이상의 기업에 포트폴리오의 50% 이상 투자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당사의 ESG 평가등급에 따라 편입 비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2026년 8월 30일 현재 ESG 평가등급 Average 이상에 99.89% 투자하고 있습니다.

2. 주주활동 내역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https://www.baring.com/ko-kr/individual/sustainability/korea-esg>)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업무

- ① 투자신탁의 설정
-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 ③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④ 기타 법령 및 집합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 ⑤ 의무 및 책임

- 베어링자산운용(주)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FY 2025 2025.12.31 현재	FY 2024 2024.12.31 현재	항 목	FY 2025 2025.01.01~ 2025.12.31	FY 2024 2024.01.01~ 2024.12.31
유동자산	111,822	96,209	영업수익	41,240	38,215
비유동자산	9,270	2,785	영업비용	16,467	18,142
자산총계	121,092	98,994	영업이익(손실)	24,773	20,073
유동부채	7,666	9,384	영업외수익	0	0
비유동부채	7,407	1,155	영업외비용	0	0
부채총계	15,073	10,539	경상이익(손실)	24,773	20,073
자본금	12,000	12,000	특별이익	0	0
이익잉여금	94,019	76,405	특별손실	0	0
자본조정	0	0	법인세 비용 차감전순이익	24,773	20,073
자본총계	106,019	88,405	법인세 비용	5,159	4,198
부채 및 자본총계	121,092	98,994	당기 순이익(순손실)	19,614	15,875

라. 운용자산규모 (2026.08.28 현재, 단위: 억원)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혼합자산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투자계약	재간접					
수탁고	20,467	1,042	130	0	823	0	3,007	0	0	25,469

주1)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운용자산 제외한 수치임

2. 운용관련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B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0453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02)2073-7114 / www.kbstar.co.kr
회사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나.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다. 의무 및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⑧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⑨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의 여부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 층 (02) 6714-4600 https://www.hanais.co.kr
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나. 주요 업무

베어링자산운용㈜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집합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다.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 자산평가㈜	NICE 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03131) 서울 종로구 을곡로88 (운니동 98-5) 삼환빌딩 4층 (02)399-3350 www.koreaap.com	(0732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4층 (02)3215-1400 www.bond.co.kr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19 (02)398-3900 www.npricing.co.kr	(03162)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4층 (02) 721-5300 www.fnpricing.com
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나. 주요 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7. ESG 관련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 ESG 연구소
주소 및 연락처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대신파이낸스센터 15 층 (02) 769-3050 www.kesgresearch.com
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나. 주요 업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ESG 성과 및 리스크 평가, 의안분석, ESG 투자전략 개발, ESG 평가등급 제공 등 ESG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

* 외부평가 기관의 조사분석 결과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 수립에 단순 참고용으로 이용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과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수익자에게 시행령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첫 문장)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2항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분의 1이상”으로 적용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법제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 청구권

-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투자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투자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 분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함)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투자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재산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자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주체¹⁾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주체¹⁾: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칭),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및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④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베어링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 (www.barings.com/ko)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⑤ 임의해지 ③과 ④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 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이외의 변경사항은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통한 1회 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고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 거래 증권사 및 선물회사의 선정기준은 비용/ 중개능력
	■ 비용
	1. 국내 채권시장의 특성상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는 증권사별 경쟁에 의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래에 따른 명목 비용은 동일함
	2. 비용(Cost) 개념은 단지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로 한정하지 않고, 거래 지연에 따른 시간비용(timing cost)과 체결실패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할 경우 중개회사별로 거래비용(Cost)이 달라질 수 있음
	■ 중개능력
	1. 호가의 정확성과 신속한 체결 능력이 증권사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
	2. 중개회사의 팀워크와 개별 브로커의 능력을 감안하여 거래 우선순위 결정
	■ 중개회사의 안정성
	1.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고려
	2. 매매와 관련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
	- 당사는 매 분기별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Analyst), 트레이더의 브로커(Broker) 평가회의에 따라 중개회사를 평가 하고 다음 분기 거래 중개회사를 결정함
	- 결정에 따른 중개회사별 거래순위 기준(guideline)을 월별로 점검하고 차이 원인 등을 분석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손실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한 인덱스형투자신탁입니다.
파생상품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 등에 제한없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합니다.)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와 일부 유동성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일별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사모펀드와 일부 요건을 충족한 공모펀드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신탁계약이 종료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펀드의 환매를 청구할 경우, 판매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환매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참조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참조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참조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